

**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(인근)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
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**



안 산 시

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(인근)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0-2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임
- 「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 소음대책(인근)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공모사업의 지원 절차 및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업무협약

☐ 협약개요

- 협약 체결일 : 2026. 8.
- 협약기간 :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 유지
- 대상기관
 - 인천국제공항공사
- 소요예산 : 60,000천원(인천국제공항공사 100% 지원)

☐ 주요내용

- 대상사업, 지원금액, 사업기간, 효력 등에 관한 사항
- 사업지원자와 사업시행자의 업무 분담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사업집행실적 및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
-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

☐ 협약서(안) : 【붙임】

☐ 협약 안전 점검표

【붙임】

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(인근)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서의 목적은 『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공모사업의 지원 절차 및 시행 방법 등을 명시함에 있다.

제2조 (당사자 표시)

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기도 안산시 간에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"사업지원자"라 칭하고 주민지원 공모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경기도 안산시를 "사업시행자"라 칭한다.

제3조 (대상사업)

이 협약에 의한 주민지원 공모사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
사 업 명	사업비(원)	사 업 기 간
'놀멍쉬멍' 멍때리기 대회	60,000,000	'26.10월~12월

제4조 (업무분담)

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지원자와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.

가. 사업지원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1)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- 2)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

나.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
- 1) 본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- 2) 본 사업 시행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
- 3) 기타 본 사업에 관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

제5조 (사업비 지원)

- ① 사업지원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비는 제3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제3조의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사업지원자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 (사업비의 예납 등)

- ① 사업지원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 후,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날짜에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납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비 예치에 따른 이자는 사업지원자의 소유로 하되, 협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, 사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정산은 면제한다.

제7조 (자료제출 및 점검)

-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지원자가 사업집행실적 및 그에 관한 상세내용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지원자는 필요시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 (사업비 정산)

-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(증빙자료 포함)를 사업지원자에게 제출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정산완료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 잔액 및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산이 면제되지 않은 소정의 이자를 사업지원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 (이견발생)

본 협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 (개정)

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,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그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쌍방은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.

- 부 칙 -

제1조 (효력발생)

- ① 본 협약은 사업지원자, 사업시행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본 협약은 사업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
제2조 (협약서 보관)

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8월

“사업지원자”

인천국제공항공사

사장직무대행 김 범 호 (인)

“사업시행자”

경기도 안산시

안산시장 이 민 근 (인)

협약(보고) 안건 점검표

협약명	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(인근)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협약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 항 목	점 검 결 과												
개 요	1. 협약 기간 :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완료될 때까지	(- 년)												
	2. 협약 성격	신 규 ☒ 연 장 ☐												
	3. 공모사업 관련	여 부 ☒ ☐												
	4. 협약 당사자 : 인천국제공항공사	1곳 ☒ 2곳 이상 ☐												
	5. 협약안건 의회 제출 시기 (체결일 : 2026. 8.)	체결 전 ☒ 체결 후 ☐ (직후 회기/ 그 외)												
	6. 의회 의결후 효력발생 조건 명시 ※ 보고건 협약 제외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예산 관련	1. 의무부담 내용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1-1. 비용추계 <div>(단위: 천원)</div> 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합 계</td><td>2026</td><td>2027</td><td>2028</td><td>2029</td></tr><tr><td>금 액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/table> <div>☞ 인천국제공항공사 100%</div>	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금 액	-	-	-	-	-
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							
	금 액	-	-	-	-	-								
2. 예산부서와 사전협의	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행정 관련	1. 기타 관련 법령 저촉 관계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2. 행정 절차 -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(예: 중기지방재정계획, 공유재산관리계획 등) ☞ "미이행"의 경우 계획제출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	3. 협약 전/후 관계자 의견 수렴 - 협약 체결 전·후 관련 부서나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여부(관련부서:													